

『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유사·중복 사회보장 사업을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수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 대상자, 지원품목 및 지원액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복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 제·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제명 변경(안 제1조)
 - 현행 : 「장애인복지법」
 - 개정 :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-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변경(안 제2조)
 - 현행 : 등록장애인
 - 개정 :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휠체어 등을 지원받는 등록장애인
-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품목 조정(안 제5조)
 -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배터리는 지원품목에서 제외
-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기준 변경(안 제6조)
 -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연간 30만원 → 연간 15만원
 - 일반장애인 : 연간 15만원 → 연간 8만원

-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절차 보완(안 제7조)
 -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은 휠체어 등 여부 확인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관한 문구 삽입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(안 별지 제1호서식 ~ 별지 제4호서식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- 예산조치 : 기존 편성예산 추경 시 삭감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 -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지원대상자·지원품목·지원기준·지원절차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수혜를 방지하여 장애인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,
 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